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 표본추출 계근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내 용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산구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2015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 추진현황

세부사업명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천원)					주요내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사일리지 제조비	국 고 30% 지방비 60% 자 담 10%	88,000	26,400	52,800	-	8,800	- 사일리지 제조 (소모품, 운송비 등)지원 - 단가 : 60천원/톤

「사료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

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¹⁾(1일 제조량의 5% 이상, 최소 5개 이상) 계근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을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한 후에 제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일리지를 전량 또는 표본추출(1일 제조량의 5% 이상, 공무원 입회)하여 계근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는 보조금 집행시 농가 생산량, 평균중량, 지원단가 확인 등 정산 검정을 철저히 한 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표본추출 계근 수량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용기준 5%이상 보다 매우 미달(2.0%)되게 계근하여 평균중량을 적용하는 등 사일리지 계근 측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

1) 표본추출 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연도별	시·군	지원 대상자 (개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현황			표본추출 현황		
			지원금액 (천원)	지원물량 (톤)	사일리지 수량(A)	전체추출 수량(B)	추출비율 (B/A)	공무원 입회여부
합계		20	145,230	2,700	7,249	147	2.0	-
2015년	광산구	9	48,000	899	3,150	19	0.6	○
2016년	북구	1	36,072	668	1,289	53	4.1	○
	광산구	10	61,158	1,133	2,810	75	2.7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한 표본추출시 1일 제조량의 5% 이상 계근하여 평균중량을 산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